

의안번호	2206965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1.
추계번호	24A6336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 (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·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22조의3 (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·대학·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2 (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2조의3 (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)	

1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,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지방기업을 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것은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이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로 지정되고, 동 지역에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기편성된 예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‘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(3161-315)’사업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인재개발기관,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제도, 인재혁신 전문기업 및 전문양성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

[표 1] ‘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(3161-315)’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세부사업명 (－ 내역사업명)	2023 결산	2024 예산	2025 예산안
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	135,658	157,479	166,145
- 교육훈련	121,533	142,754	149,420
- 해외연계	8,000	8,600	8,600
- 정책기반	6,125	6,125	8,125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의 지원 기준이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
 - 개정안의 조세특례 대상, 범위,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지방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지방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에 있어서 지원 범위나 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재정지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
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